한림건설

경남진주혁신도시 A-13 블록 한림 풀에버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문의 055)753-15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3. 05. 1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은행은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3.06.03)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개정 2012.9.25)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에 따라 해당주택건설 지역인 진주시 거주자가 우선 합니다.

■ 당 사업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5에 규정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에게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70%를 특별공급 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에 한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진주혁신도시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1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청 건축과 – 903 호 (2013. 5. 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남진주혁신도시 A-13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상 10~25층 1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1,697대 (근린생활시설 26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1,421세대 중 특별공급 1,387세대 포함(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994세대, 일반 특별공급 141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41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타입	세대당 계약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계	특별공급 이전기관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일반공급	해당동	1층우선 배정세대	입주 예정 시기
민영주택	2013000461-01	67.3717	67A	67.3717	27.0992	94.4709	32.3443	126.8152	50.0203	90	63	9	4	9	2	3	102,103,109	6	2015년 10월
	2013000461-02	67.1597	67B	67.1597	27.0396	94.1993	32.2425	126.4418	49.8629	106	74	10	5	10	3	4	101,102,103,109	6	
	2013000461-03	84.9088	84A	84.9088	27.9387	112.8475	40.7637	153.6112	63.0408	602	421	60	30	60	18	13	104,105,106,107,108,110,111,112 113,114,115,116,117,118,119	25	
	2013000461-04	84.9644	84B	84.9644	28.0700	113.0344	40.7904	153.8248	63.0820	623	436	62	31	62	18	14	104,105,106,107,108,110,111,112 113,114,115,116,117,118,119	2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천원)

주택형	해당동 (라인)	공급 세대수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택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10%) 계약시	중도금(60%) 1차 2013.08.12	2차 2013.12.12	3차 2014.04.11	4차 2014.09.12	5차 2015.01.12	6차 2015.05.12	잔금(30%) 입주시
67.3717	102(2,3호),103(2,3호),109(2,3호)	90	1층	6	26,348	147,105	173,453	17,345	17,345	17,345	17,345	17,345	17,345	17,345	52,038
			2층	6	26,348	156,741	183,089	18,308	18,308	18,308	18,308	18,308	18,308	18,308	54,933
			기준층	78	26,348	166,377	192,725	19,272	19,272	19,272	19,272	19,272	19,272	19,272	57,821
67.1597	101(1,2호),102(1,4호),103(1,4호), 109(1,4호)	106	1층	6	26,265	146,689	172,954	17,295	17,295	17,295	17,295	17,295	17,295	17,295	51,889
			2층	6	26,265	156,298	182,563	18,256	18,256	18,256	18,256	18,256	18,256	18,256	54,771
			기준층	94	26,265	165,906	192,171	19,217	19,217	19,217	19,217	19,217	19,217	19,217	57,652
84.9088	104(2,3호),105(2,3호),106(2,3호),107(2,3호), 108(2,3호),110(2,3호),111(2,3호),112(2,3호), 113(2,3호),114(2,3호),115(2,3호),116(2호), 117(2,3호),118(2,3호),119(2,3호)	602	1층	25	33,207	173,986	207,193	20,719	20,719	20,719	20,719	20,719	20,719	20,719	62,160
			2층	29	33,207	185,497	218,704	21,870	21,870	21,870	21,870	21,870	21,870	21,870	65,614
			기준층	548	33,207	197,008	230,215	23,021	23,021	23,021	23,021	23,021	23,021	23,021	69,068
84.9644	104(1,4호),105(1,4호),106(1,4호),107(1,4호), 108(1,4호),110(1,4호),111(1,4호),112(1,4호), 113(1,4호),114(1,4호),115(1,4호),116(1,3,4호), 117(1,4호),118(1,4호),119(1,4호)	623	1층	23	33,229	174,308	207,537	20,753	20,753	20,753	20,753	20,753	20,753	20,753	62,266
			2층	27	33,229	185,838	219,067	21,906	21,906	21,906	21,906	21,906	21,906	21,906	65,725
			기준층	573	33,229	197,367	230,596	23,059	23,059	23,059	23,059	23,059	23,059	23,059	69,183

※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 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공통사항
- 2009. 04. 01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경남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가 미포함 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공급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 계약시 선택이 가능한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 과세 기준)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도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시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출이자는 본인이 자력납부 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4%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불가)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일시 ·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①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1차:2013.05.16(목) (09:00~17:30) 2차:2013.05.20(월) (09:00~17:30) 2차 신청은 1차 신청 미달 주택형에 한해 접수	한국주택협회홈페이지(www.housing.or.kr)또는 (apt2.housing.or.kr) 접속 가능
	당첨자 선정	2013.05.21(화) (14:00~)	• 확인방법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또는 apt2.housing.or.kr)
②일반 특별공급 ③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④신혼부부 특별공급 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청	2013.05.20(월) (10:00~16:3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2013.05.21(화) (14:00)	

※단,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항목 적용 배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철거민,장애인,국가유공자)는 아래의 요건을 제외함],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자

■ 신청방법
-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하시기 바람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청약을 할 수 있음)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접속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스템(apt2.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에서 "한림풀에버" 아파트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 완료
- 신청시간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간은 09:00~17:30 이며, 청약 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1회 제한 및 예외사항
- 특별공급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에 의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됨.
  ① 사업주체가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함에 따라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③ 사업주체가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 계약체결일 : 2013.06.03(월) ~ 2013.06.05(수) (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5 : 994세대 / 70%)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함
  가) 당해 혁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나) 당해 혁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당해 혁신도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라) 그 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의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진주혁신도시 주택건설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의하여 과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1세대내 1건만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특별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및 당첨자 명단관리).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 · 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2)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141세대 /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자(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은신분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70세대 / 5%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해당 사항	비 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 기 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141세대 /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기준

구 분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492,364원 이하	5,017,805원 이하	5,268,647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390,836원 이하	6,021,366원 이하	6,322,376원 이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이어야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평균소득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라)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에 포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사실증명서	접수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9항 제1호(개정 2013.2.5)
- 경쟁발생시 당첨자 선정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41세대 /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 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6)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①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양식 사용
	○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③무주택서약서		• 필요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④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⑤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	⑥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⑥,⑦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⑦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⑦ 제출
		○	⑧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 청약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외(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	⑨제3자 대리인 서류	본인/대리인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신청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감도장
일반 특별공급	○		①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복지카드 불가)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②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③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필요시 제출
		○	④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⑤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⑦소득증빙 구비서류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⑧재직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며, 배우자 소득증빙 가능시 배우자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다자녀		○	①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③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④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부		○	①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②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 현재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3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를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1) 순위별 신청자격

구 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7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
		추첨제 대상자 (25%)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동일 계좌로 청약하는 경우 최초 청약시 선택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에 신청 가능]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 추첨제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전용면적 \ 지역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기타 시 · 군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5㎡초과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1995.2.11)"에 의하여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전국	2013.05.22(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www.apt2you.com) * 접수시간 – 인터넷 : 08:00~17:30	* 일시 : 2013.05.29(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3.05.22(수)		
	3순위		2013.05.23(목)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www.apt2you.com) * 접수시간 – 인터넷 :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 ·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신청 하여야 함
(2) 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 · 동별 · 호별 ·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 · 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2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격 기재방법(국민은행 가입자에 한함)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등 · 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3)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4)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미혼자일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 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 (배우자 포함)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가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점 산정기준

구분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3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전체서비스⇒주택청약⇒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인터넷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 ·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에 계좌개설후 3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시 가능한 청약신청 지역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3.05.30)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관계자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은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여 동 · 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최초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당첨자 발표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3. 05. 29(수) ~ 2013. 06. 07(금)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3. 05. 29(수) ~ 2013. 06. 07(금)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3. 05. 29(수)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정당당첨자 : 2013. 06. 03(월) ~ 06. 05(수) (3일간, 시간 09:3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경남은행	508-32-0001351	국제신탁주식회사대표이사 김정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경남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가능)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	○		주민등록증 등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결혼,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이혼, 사별,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녀의 주민등록표초본
		○	국내거소신고증	본인	• 재외동포(국내거주 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	외국인등록증	본인	• 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서약서(「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첨 서식)
부적격통보를 받은자(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여권)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05.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가점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추첨제).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입주자의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청약 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12.09.25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에 준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67.3717	67.1597	84.9088	84.9644
발코니 확장 면적	28.5460	25.8105	28.4170	28.2373
발코니 확장 공사비	7,000,000	7,500,000	8,000,000	8,50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 외부 샷시는 기본으로 제공되나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 외부 샷시는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 계약 후 자재발주 등으로 취소는 불가하며, 전매 시에도 이를 승계 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각형별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 하였으며, 비 확장 시 공간, 인테리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후 거실, 안방, 침실바닥은 온돌마루 적용함.
- 일정기한 이후 미분양 아파트는 일괄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 예정이며, 미분양세대를 구입 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조건 및 일정

(단위 : 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2014.04.11)	잔 금(입주시)
67.3717	700,000	1,400,000	4,900,000
67.1597	750,000	1,500,000	5,250,000
84.9088	800,000	1,600,000	5,600,000
84.9644	850,000	1,700,000	5,950,000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 납부계좌	경남은행	508-07-0193497	한림건설(주)대표이사 김의수

■ 시스템 에어컨(선택품목)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선택	세부사항	실내기, 실외기	설치비용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4.04.11	잔금 입주시
67.3717	선택1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침실3	4+1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선택2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3+1	4,400,000	440,000	880,000	3,080,000
	선택3	침실1(안방), 거실	2+1	3,200,000	320,000	640,000	2,240,000
67.1597	선택1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침실3	4+1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선택2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3+1	4,400,000	440,000	880,000	3,080,000
	선택3	침실1(안방), 거실	2+1	3,200,000	320,000	640,000	2,240,000
84.9088	선택1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침실3	4+1	5,800,000	580,000	1,160,000	4,060,000
	선택2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3+1	4,700,000	470,000	940,000	3,290,000
	선택3	침실1(안방), 거실	2+1	3,400,000	340,000	680,000	2,380,000
84.9644	선택1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침실3	4+1	5,800,000	580,000	1,160,000	4,060,000
	선택2	침실1(안방), 거실, 침실2	3+1	4,700,000	470,000	940,000	3,290,000
	선택3	침실1(안방), 거실	2+1	3,400,000	340,000	680,000	2,380,000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경남은행	508-07-0193507	한림건설(주)대표이사 김의수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파트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임.
- 상기 선택품목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사항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복도, 〈타일, 석재〉현관, 〈장판〉침실, 〈타일〉발코니, 실 · 외기실, 대피 공간 바닥, 발코니바닥	바닥난방+미장+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장식벽(타일,석재), 주방벽타일, 몰딩,우물천정 인테리어	벽 : 단열+석고보드+미장, 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 석재(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문,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씽크볼, 렌지후드, 주방가구 가전일체	설비배관, 소방관련시설, 전기, 통신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실, 팬트리전체, 발코니수전,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수납선반, 화장대, 반침가구(붙박이장,시스템장)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창호	목창호(문틀,상부마감판,문선,문짝,손잡이철물,경첩외하드웨어 일체), 디지털 도어락	목창호 가틀,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방화문, 대피 공간 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거전용면적)	67.3717	67.1597	84.9088	84.9644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19,851	19,871	23,015	23,043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과 발코니확장옵션 금액의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개시일로 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게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 바람.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이 미포함 됨.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등

■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당사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 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시 사업주체가 대납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대출이자는 본인이 자력납부 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5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분양가 내역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 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비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2,160,662,250	
	기간이자	1,820,422,300	
	그밖의비용	1,866,606,450	
계		45,847,691,000	
공사비	토목	13,116,711,000	
	건축	98,408,291,000	
	기계설비	14,039,494,000	
	그밖의공종	23,333,245,000	
	그밖의공사비	20,845,683,290	
계		169,743,424,290	
간접비	설계비	1,746,000,000	
	감리비	3,274,716,000	
	부대비	93,612,074,000	
계		98,632,790,000	
그밖의 비용		3,644,801,710	
합계		317,868,707,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탁사업
- 본 사업은 시행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이 국제신탁(주)에게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이고, 국제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관리계좌로 분양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분양대금이 본건 사업을 위한 토지비, 공사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 및 국제신탁(주)에게 발생하는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등)는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이 책임 처리한다.
-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의 해지, 신탁목적의 달성(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 완료)등으로 신탁이 종료될 경우 국제신탁(주)의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 일체(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한다)는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국제신탁(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계약서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겸 수익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에게 승계된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미시공 및 오시공과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포함)은 위탁자인 디에스네트웍스(주)와 ㈜청탑 또는 시공사인 한림건설(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국제신탁(주)에게 어떠한 하자보수도 청구할 수 없다.
- 본 사업부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이 미준공 및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승인후 대지권지분등기가 지연되어 피분양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 분양계약자는 본 팜플렛에 기재된 내용 및 광고의 문구 등을 통해 명기된 사업지 주변기반(예정)시설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기타 시행자의 사정 및 경제여건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체 내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자, 수탁자겸 매도인, 시공자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한다.

■ 청약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하며, 이후 변경한 경우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공급안내문 및 카탈
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등이 부과됨

■ 발코니 확장 및 마감재 등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가와 별도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별도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이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 등)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사항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및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께서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세대가 발코니 미확장일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 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도면,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입주조검토결과 등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 후 자재발주 등으로 취소는 불가하며, 전매 시에도 이를 승계 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각 형별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하였으며, 비확장시 공간, 인테리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
* 일정기한 이후 미분양 아파트는 일괄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 예정이며, 미분양세대 구입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관계법령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다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로 전시되므로,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후 거실, 안방, 침실바닥은 온돌마루 적용함

■ 지구여건
* 진주혁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진주혁신도시내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전 예정임
* 본 지구 동 · 북쪽으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여 훈련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공공청사, 상업시설 및 초,중,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인접동은 이로 인한 소음 및 조망권 침해,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서북방향으로 근린공원 및 중학교가 인접하고 있고 남서쪽으로 공공청사용지와 인접하고 있음
– 단지 서측으로 도로를 지나면 근린공원용지, 남서 방향으로 상업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남측 및 동측으로 도로를 지나면 공동주택용지(A-12BL) 및 공원, 복지 시설 용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근린생활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음.
– 각 단지의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단지에 인접한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부는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각동의 승강기 운행 및 승강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부(119동 측면) 조경공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설치 예정위치)(현장여건상 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에어컨 냉매 배관은 거실 및 안방만 설치됨
– 거실 냉매 배관용 매립 박스는 스탠드형으로 시공되며, 안방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엑자형을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는 침실1발코니에 위치하게 되어있으 소음 및 열(熱)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사업승인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실 대지측량 ·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본계약 건물의 견본주택(실물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의 위치, 단지레벨 및 세대 구조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내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사업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음벽 등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벽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어린이놀이터등 단지 내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평면,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 ·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과 동사이 및 측벽에 옥외 쓰레기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 될 수도 으며 수거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 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체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단지내 보안 · 가로등, 주변도로 가로등, 단지주변 근린공원내 공원등 불빛의 영향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상에는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한 개의 동에서 층수 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 지붕층에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에서 배기되는 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확산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 · 후 ·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심야 발전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과 중앙광장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1층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으며, 필로티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에서는 보행자 통행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필로티의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의 모형과 분양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중 일부는 데크층에 설치되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에 설치되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차량출입구로 인하여 차량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일부 도로는 보, 차도 혼합 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12동의 경우 1층 일부가 PIT 및 피로티로 형성되어 있으며, 세대는 2층부터 해당하며, 201호 및 202호는 배면부가 1층으로 형성됨.
- 색채계획 및 옥외 시설물은 향후 인, 허가 과정 중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공사 시 주방 또는 다용도실 내부에 세대 분전반,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욕실 바닥에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석재, 온돌마루 등 천연소재의 자재의 경우 천연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VEIN)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이 동측 및 서측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한 일부 동에서는 이용자들과 주차통행에 따른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주차구획(지상 13대)이 있으나 출입구 및 도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 구획은 불가함.
- 단지의 주위로 근린공원, 공동주택, 중학교, 공공청사 상업시설 등의 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일조, 조망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관리사무소등 과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상황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기계식 환기장치가 전평형은 에어컨 실외기실 천장에 별도의 마감 없이 플렉시블 호스, 덕트와 함께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기밀성 2등급 이상
고효율기자재	적용	보일러, 펌프류 모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침실,주방에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현관부위 설치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내 침실 및 거실부위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 절수형설비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케이디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하림기술단	현대공영(주)	
감리금액	2,570,216,000	572,500,000	132,000,000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13-101-0003200호	222,502,973,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용어의 정의)
"보증사고" 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사업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사용검사 포함)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입주금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시공사

구분	항목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시행사	상 호	국제신탁(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서울-주택2004-0091)	공동 위탁사	상 호	디에스네트웍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8번지
	법인등록번호	110111 – 2003236		법인등록번호	110111 – 0287048
시공사	상 호	한림건설(주)		상 호	(주)청탑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2 현대증권 빌딩 5층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5번지
	법인등록번호	190111 – 0012051		법인등록번호	110111 – 1127706

■ 견본주택 위치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147-2번지
■ 사이버견본주택 : http://www.hanlim-const.co.kr/
■ 분양문의 : ☎(055)753-1500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